

# 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등)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0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생활체육공간이 부족한 용평면지역에 체육발전과 군민의 건강·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용평면 장평리 산266-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,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,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및 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보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(A=43,870㎡)
- 군계획시설 결정 : 체육시설 신설(A=47,047㎡)
  - 축구장 1면, 테니스장 2면, 농구장 1면
  - 진입도로 신설(B=10m, L=587m)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□ 주민의견 청취(공람공고)

가. 공람기간 : 2010. 1. 1 ~ 2010. 1. 20(20일간)

나. 공람방법 : 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,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및  
용평면사무소 게시판게시

다. 공람장소 : 평창군청 문화체육과, 용평면사무소

라. 제출의견 : 없음

#### □ 관련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09. 12. 29 ~ 2010. 01. 08

나. 협의부서 : 9개 부서(주민생활지원실, 민원봉사과, 재무과, 문화체육과,  
환경과, 산림과, 건설방재과, 농축산과, 상하수도사업소)

다. 제출의견 : 별도의견 없음

# 평창 군관리계획(시설: 체육시설등) 결정(변경)(안)

## 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###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
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47,047	-	47,047	100.0
관리지역	소 계	47,047	-	47,047	100.0
	보전관리지역	43,870	감) 43,870	-	-
	계획관리지역	3,177	증) 43,870	47,047	100.0

### 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	
-	용평면 장평리 산266-2번지 일원	보전관리 지역	계획관리 지역	43,870	100%이하	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하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

## 2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

### 1) 체육시설

#### 가. 체육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용평생활 체육시설	생활 체육시설	용평면 장평리 산266-2번지 일원	-	증)47,047	47,047	-	

## 나. 체육시설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체육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용평생활체육시설	체육시설 신설 A = 47,047㎡	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육시설 신설

## 2) 도로

### 가.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1	4	10	국지도로	587	장평리 459-2도	장평리 687-3도	일반도로	-	-	-

### 나.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1-4	노선 신설 (B=10m, L=587m)	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신설

# 편 입 토 지 조 서

## 1. 체육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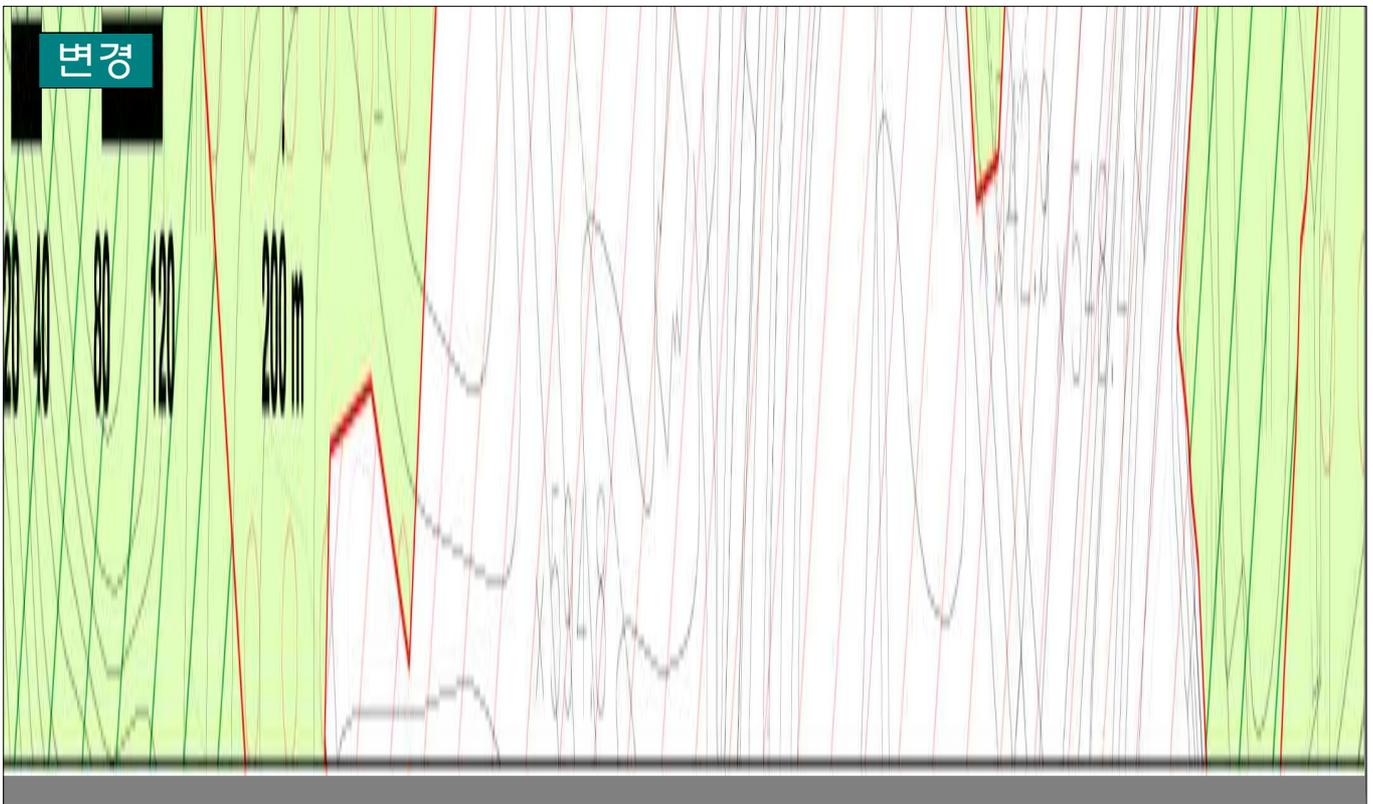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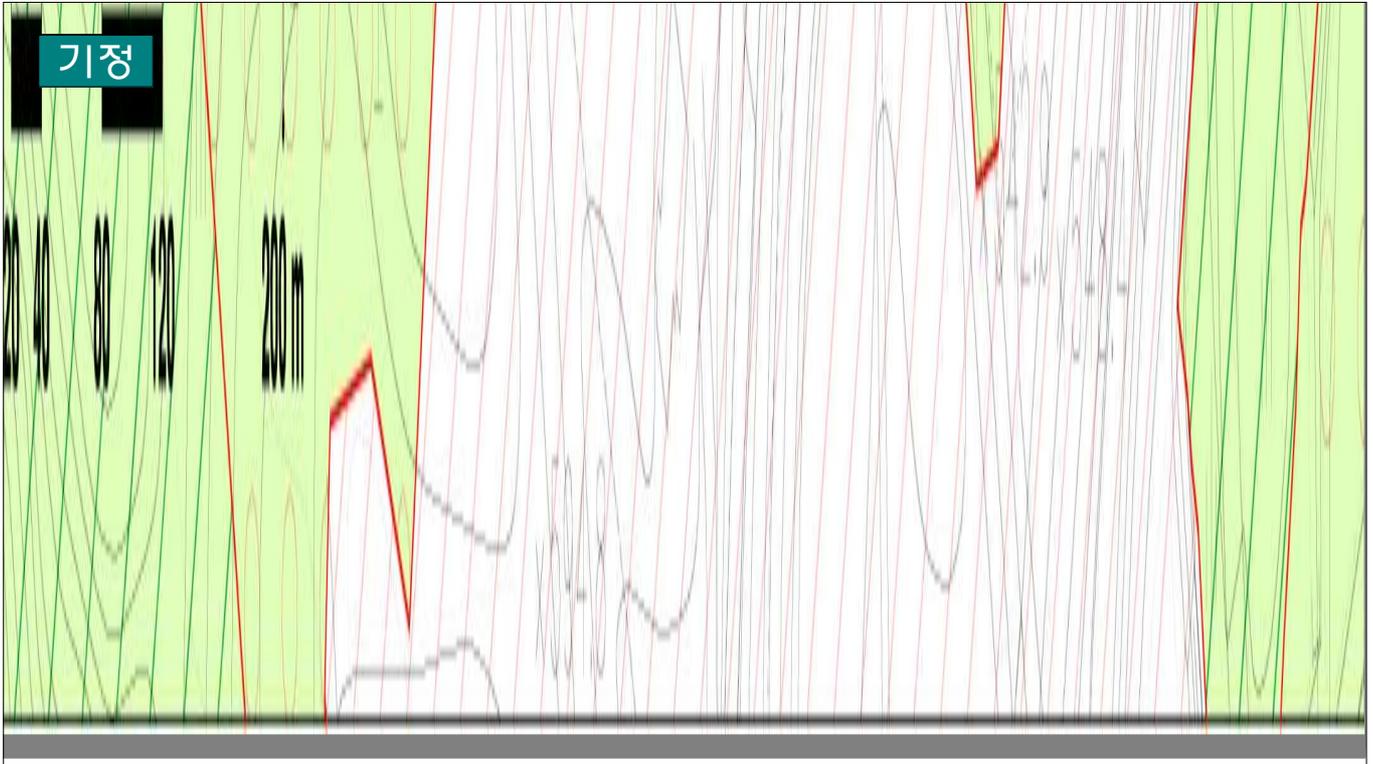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
						성 명	주 소
1	용평면 장평리	645	전	2,655	2,655	평창군	
2	용평면 장평리	646	전	2,314	2,314	평창군	
3	용평면 장평리	649	임	6,139	6,139	평창군	
4	용평면 장평리	650	전	793	793	평창군	
5	용평면 장평리	650-1	임	6,998	6,998	김흥기	용평면 장평리 335
6	용평면 장평리	650-2	임	3,279	3,279	평창군	
7	용평면 장평리	650-4	임	10,701	10,701	김흥기	용평면 장평리 335
8	용평면 장평리	651	전	605	605	평창군	
9	용평면 장평리	687-3	구	13,011	4,082	국(국토해양부)	
10	용평면 장평리	산266-2	임	9,481	9,481	평창군	
계				55,976	47,047		

## 2. 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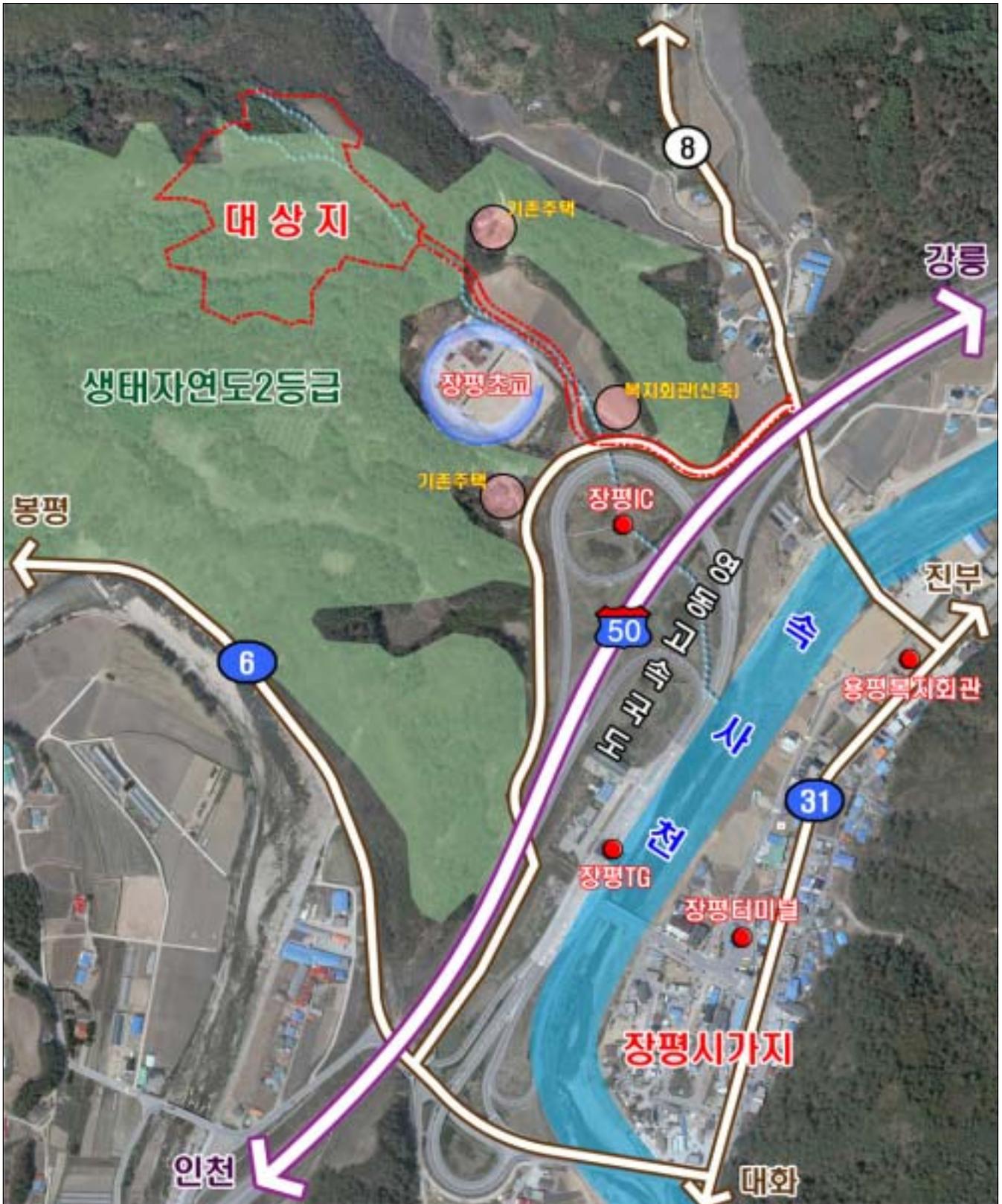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
						성 명	주 소
1	용평면 장평리	404	도	357	23	국(국토해양부)	
2	용평면 장평리	404-1	학	23,734	1,036	강원도(교육감)	
3	용평면 장평리	405	도	512	15	국(국토해양부)	
4	용평면 장평리	407-1	도	30	9	국(국토해양부)	
5	용평면 장평리	408-1	전	777	7	국(국토해양부)	
6	용평면 장평리	408-2	도	511	291	국(국토해양부)	
7	용평면 장평리	410-2	도	9,884	340	국(국토해양부)	
8	용평면 장평리	410-3	도	165	24	국(국토해양부)	
9	용평면 장평리	434-2	도	2,327	671	국(국토해양부)	
10	용평면 장평리	459-2	도	329	12	국(국토해양부)	
11	용평면 장평리	653	전	5,521	237	윤혜신 외 1인	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-1 개포6차우성아파트 2-107
12	용평면 장평리	676	천	325,950	105	국(국토해양부)	
13	용평면 장평리	687-3	구	13,011	1,673	국(국토해양부)	
14	용평면 장평리	687-13	구	2,695	381	국(국토해양부)	
15	용평면 장평리	산255-2	도	1,190	260	국(국토해양부)	
16	용평면 장평리	산255-3	도	1,190	57	국(국토해양부)	
17	용평면 장평리	산255-4	도	1,078	641	국(국토해양부)	
18	용평면 장평리	산256-1	도	209	58	국(국토해양부)	
19	용평면 장평리	산258	임	6,499	47	국(산림청)	
합 계				71,139	5,887		

# 관 련 도 면

## 1. 군관리계획 결정(안)도



## 2. 주변현황도



### 3. 조성계획(안)도



### 4. 조감도

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### 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  - 마. 유통업무설비
  - 바. 학교중 대학
  - 사. 운동장
  - 아. 삭제 <2005.9.8>
 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 - 차. 화장장
  - 카. 공동묘지
  - 타. 납골시설
 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